

회원 활용 업무 목록(Ⅲ)

NO	표준 직무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1	수입물품 가산율 (공제율) 산정신청	제3호	<p>◎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 시행령(제30조제2항) •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-9조제1항 및 [별지9]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1년간의 당해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• 거래관계기본계약서 •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• 수입물품공급계약서 •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• 거래관계기본계약서(투자계약서, 대리점계약서, 기술용역계약서, 기술도입계약서 등) <p>필요시 구비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 (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함) <p>◎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-481-7984</p>
2	수입신고 필증 정정신청	제3호	<p>◎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(제38조) • 관세법 시행령(제33조) (제34조) (제35조) •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-2-10조, 제2-5-4조, 제2-5-5조, 제2-5-6조, 제2-5-7조,[별지제15호] 및 [별지 제15-2호]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	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제출서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정신청서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(입)신고필증(내부자료확인) <p>◎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-481-7643</p>
3	외교관전용 보세판매장 물품 면세통관 신청	제3호	<p>◎ 외교관이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속 공관장(주류·담배의 경우 외통부장관 승인 필요)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전용보세판매장에 제출하면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면세통관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근거법령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(제196조 제1항) • 관세법 시행령(제213조 제2항) •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 제2항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제출서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세통관신청서 <p>◎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-481-7853</p>
4	주한미군 계약용 물품 수입신고	제3호	<p>◎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물품 수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(정해진 기간내에 납품완료후 완료 증명제출로 사후관리 종결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근거법령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(제2조) (제6조) 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제9조제2항)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	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제출서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한미군계약용수입물품증명서 • 주한미군용수입물자납품완료증명서 <p>☉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-472-2183</p>
5	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	제3호	<p>☉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(산자부고시)의 규정에 의거 수입 및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을 위한 민원사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근거법령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(제9조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제출서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하대금납부필증 사본 • 계약서(불하목록 포함) 사본 <p>☉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-472-2183</p>
6	주한미군 물품 수입신고	제3호	<p>☉ 주한미군 등 SOFA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미군 통관장교가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근거법령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제9조 제2항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제출서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한미군물품 수입신고서 <p>☉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-472-2183</p>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7	간이 수출신고	제3호	<p>◎ 서류,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 업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법 시행령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이통관목록 1부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8	관세감면 신청	제3호	<p>◎ 외국물품 수입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법(제88조) (제89조) (제90조) (제91조) (제92조) (제93조) (제94조) (제95조) (제96조) 관세법 시행령(제112조제1항) 관세법 시행규칙(제34조) (제36조) (제38조) (제40조) (제42조) (제44조) (제47조) (제49조)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(관세법제89조의경우) 주무부장관확인서(해당 의 경우) 기중사실증명서 1부(해당 의 경우) 계약서사본(관세법제88조제1항제5호의경우) 당해수요기관확인서(관세법제92조제2호의경우) 통관내역(관세법제96조제2호의경우) 당해사실증명서(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) <p>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증명원(중소제조업체의 경우)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9	보세구역 장외보수 작업허가	제3호	<p>◎ 보수작업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(제158조 제1항)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서 • 담보제공확인서 <p>◎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-481-7806</p>
10	사후관리 물품 폐기승인	제3호	<p>◎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 시행령(제109조제3항) 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 제1항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(승인)서 <p>◎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-481-7643</p>
11	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	제3호	<p>◎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서 • 물품 설명자료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12	수출신고 정정승인	제3호	<p>◎ 수출신고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(제2-5-1조제1항 및[별지2])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신고정정승인(신청)신청서 (필요시)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<p>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필요시) 사업자등록증명원 (필요시) 폐업사실증명원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13	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	제3호	<p>◎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송절차에관한고시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신고취하승인(신청)신청서 2부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14	임시개청 통보	제3호	<p>◎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, 보세운송절차, 입출항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법(제321조) 관세법 시행령(제275조제1항) 관세법 시행규칙(제81조)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시개청통보서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15	재수출 기간연장 신청	제3호	<p>◎ 재수출이행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(제97조) • 관세법 시행령(제114조)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수출기간연장 신청서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16	특정물품 특정세관 이외세관 통관신청	제3호	<p>◎ 통관지세관이 특정세관으로 지정된 특정물품(한약재 등)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업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물품 특정세관 이외세관 통관 신청서 <p>◎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-481-7811</p>
17	평균세액 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지정	제8호	<p>◎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의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(제11조) •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(제12조) •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-1-1조 및 [별지4-1]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신청서(갑) •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신청서(을) • 사업장별주요수출물품내역 • 수출물품별소요원재료의 내역 • 지정받고자하는 품목번호(HS10단위)의 최근 3개월간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구매실적 <p>◎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-481-7643</p>

NO	표준 직부	분류 (관세사법 제2조)	민원사무 및 근거법령
18	환급금 양도 신청	제8호	<p>◎ 환급신청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(제46조제3항) • 관세법 시행령(제53조) •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호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급금양도 신청서 • 인감증명서(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) <p>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감증명서 <p>◎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-481-7643</p>
19	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(적재) 확인정정 (취하)신청	제8호	<p>◎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(적재)확인내용을 정정하거나 취하하고자 할 경우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(적재)확인정정(취하)승인 신청서 <p>◎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-481-7643</p>
20	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	제3호	<p>◎ 보세공장에서 제조·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담이나 전시등을 위하여 견본반출허가 받아 반출한 후 재반입하기 위한 신고 사무</p> <p>근거법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세법(제161조) •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29조 제2항 별지 15호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서 <p>◎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-481-7826</p>